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산업 분야 취업·창업 희망자 등을 영어(營漁)기술
교육훈련사업 대상으로 추가〉

■ 주철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6415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수산업 분야 취업·창업 희망자 등을 영어기술(營漁技術) 교육훈련사업 대상으로 추가	2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주철현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4. 12. 12.

3. 회 부 일 : 2024. 12.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수산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훈련사업의 하나로 수산업인, 어촌 청소년·청년·여성 등에 대한 영어기술(營漁技術) 교육훈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훈련사업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어촌에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이는 어촌으로의 신규 인력 유입 및 후계 어업인 양성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산업 종사자가 아니거나 어촌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수산업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 등을 교육훈련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미래어업인력 육성 기반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5호나목).

Ⅲ. 검토의견

1. 수산업 분야 취업·창업 희망자 등을 영어기술(營漁技術) 교육 훈련사업 대상으로 추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산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행하는 교육훈련사업 중 영어기술(營漁技術) 교육훈련 사업의 대상에 수산업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항제5호 개정).

[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교육훈련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시험연구사업·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 나. 수산업인, 어촌 청소년·청년·여성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u>구성원</u> 에 대한 영어기술(營漁技術) 교육훈련 사업	제2조(정의)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u>구성원 또는 수산업 분야</u> <u>에 창업·취업할 의사가 있</u>

다. 후계어업경영인 및 전업경영인(專業經營人) 등 전문수산업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생략)	<u>는 자 등</u>----- 다.·라.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2조는 이 법의 ‘교육훈련사업’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 정의하고, 그 범위에 ‘수산업인, 어촌 청소년·청년·여성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영어기술(營漁技術) 교육훈련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교육훈련사업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어촌에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어촌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 중 수산업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할 의사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영어기술을 교육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았음.

- 현행법 제2조제1항제5호 라목은 교육훈련사업의 범위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나, 현재 대통령령에는

다문화가족의 수산업 관련 교육 사업, 수산업인에 대한 정보화 교육 사업만이 규정되어 있어 취업·창업 희망자에 대한 영어기술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수산업 분야에 취업·창업할 의사가 있는 자도 영어 기술 교육훈련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어촌인구의 감소에 대비하고 영어교육 실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를 자세히 보면, 최근 전체 어가 인구가 2019년 11만 3,900명에서 2023년 8만 7,100명으로 감소하고, 연령별 어가인구 역시 60대 이상이 65.2%로 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¹⁾²⁾, 향후 어촌소멸 및 인력 부족 현상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어가 및 어가인구(2019년~2023년)]

(단위: 천 가구, 천 명, %, %p)

구 분	2019	2020	2021	2022(A)	2023(B)	증 감 (C=B-A)	증감률 (C/A×100)
어 가	50.9	43.1	43.3	42.5	41.8	-0.8	-1.8
어가 비율(%)*	0.3	0.2	0.2	0.2	0.2	0.0	-
어 가 인 구	113.9	97.1	93.8	90.8	87.1	-3.7	-4.1

* 자료: 통계청(2024)

1) 통계청 농림어업조사(2023년 기준), 2024.4.

2)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귀어가구는 9,888개 어가(1만 2,876명)로 연 평균 988어가 1287명이 귀어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동안 어가인구는 연 평균 5,653명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연령별 어가인구(2022~2023년)]

(단위: 천 명, %)

구 분	계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22	90.8 (100.0)	8.4 (9.3)	3.7 (4.0)	7.5 (8.3)	14.8 (16.3)	31.3 (34.5)	25.1 (27.7)
2023	87.1 (100.0)	7.0 (8.0)	3.3 (3.8)	6.6 (7.6)	13.4 (15.4)	30.9 (35.5)	25.8 (29.7)

* 자료: 통계청(2024)

- 한편, 현행 교육관련 법체계를 살펴보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에서 “후계청년농어업인법”이라 함)의 경우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 등 자격요건³⁾을 갖추어야 하고,

수산계고교 등을 지원하는 근거법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도 예산의 범위에서 농수산계 고등학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⁴⁾, 학생들에게 영어기술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으며,

현행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도 영어기술 교육훈련사업의 대상을 수산업인이나 어촌에 거주하는

3)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후계농어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5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총 영농·영어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어야 하고, ‘청년농어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일 것을 요함.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농업·수산업 기초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수산업에 종사할 기초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수산계 고등학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수산업 분야에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자 전반을 규율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보임.

□ 이에 개정안은 어촌에 거주하지 않거나 현재 수산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수산업 분야에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후계청년농어업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50세 이상인 취업·창업 희망자나 어촌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현행법의 교육훈련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수산계 고교 학생 등에 대한 영어교육 실시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 질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 관련 부처 의견으로, 해양수산부는 미래 어업인력 육성 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개정안에 동의하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22

참 고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사업

□ 사업개요

○ 목적

-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에 능동적 대응과 어촌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수산전문인력 양성 및 기반 구축

□ 사업내용

- (수산계학교 지원) 수산분야 신규·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수산계 취업·창업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 및 지역 수산대학의 인력·인프라를 활용한 수산인 교육 등 지원 등 **'24년 8,948백만원**

* 수산경영 대학과정(10개), 수산계고교 특성화 지원(9개교)

** 예산: 3,339(20년), 3,332(21년), 3,832(22년), 9,324(23년), 8,948백만원(24년)

- (일자리 창출 및 기술지원) 귀어·수산업 입문자들의 기술 향상을 위한 멘토링 지원 및 기술보급지·기술동영상 제작·보급, 수산계 구인·구직자들을 위한 일자리 정보 제공 등 **'24년 2,320백만원**

* 일자리지원센터(9개소), 어업인 기술보급 등

** 예산: 2,271(20년), 2,319(21년), 2,281(22년), 1,959(23년), 2,320백만원(24년)

- (어업인 역량강화) 수산업경영인, 어촌후계자, 여성어업인 등 어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지원 등 **'24년 923백만원**

* 어업인교육훈련(8,000명), 어업인 단체 역량강화 교육 지원(5개 내외)

** 예산: 1,368(20년), 1,221(21년), 992(22년), 992(23년), 923백만원(24년)

□ 사업예산(최근 5년간)

(단위: 백만원)

구 분(년도)	'20	'21	'22	'23	'24
□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6,978	6,872	7,105	12,275	12,191